



제236회 임시회
'05. 2.23(수) 13:30

검 토 보 고 서

-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
관한 조례안

관광건설위원회
전 문 위 원

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5년 2월 2일
- 회부일자 : 2005년 2월 2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와 인근지역 민족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·연구 및 보호·보존관리를 위하여
- 재단법인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4. 주요골자

-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조사·연구 및 자료발간, 보호·관리, 보존처리 및 수장전시,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함
-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
-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문화유산의 조사·보호·보존 관리에 관련된 사업을 연구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음

5. 검토의견

- 재단법인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
- 도내 및 인근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보호·보존관리를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함은 물론,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, 도내 문화유산 보존·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함은 재단법인의 사업을 유동적으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취지로서
-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 지나
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과 연구원 운영에 있어서의 수입원과 지원 대상 사업, 특히 잉여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상 명문화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